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4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 군의회 의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되는 군의회 의장의 의원 추천 규정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되는 군의회 의장의 의원 추천 규정 개정(안 제3조제3항제2호가목)

-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⇒ 군의회 의원 1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판례 :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(대법원, 2007추141,2009.12.24)

나.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5253(2010.10.24)호 각종위원회 군의회의원 위촉관련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통지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 : 생략(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)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군의회 의원 1명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(생 략)	제3조(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,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.
1.(생 략)	1.(현행과 같음)
2. 위촉직 위원	2. ----------
가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	가. 군의회 의원 1명
나. ~ 라.(생 략)	나. ~ 라.(현행과 같음)